

2018 ISSUE PAPER 1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연구교육팀 장윤주, 이영주, 전현경

2018. 5.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I. 들어가며 ————— 02

II. 국내 비영리조직의 법적 정의 ————— 03

1. 법인과 비법인
 - 1) 법인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2) 비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2.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법
 - 1) 민법
 - 2) 특별법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 3)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3. 세법과 비영리조직
 - 1) 법인세법
 - 2) 상속 및 증여세법

4. 기부금 관련 법
 - 1) 지정기부금단체
 -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3)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III. 비영리데이터 등록현황 ————— 11

1. 국내 비영리기관 데이터 현황

2.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 1) 비영리법인
 - (1)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 (2) 부처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 2) 비영리민간단체
 - (1)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 (2) 부처 및 위원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

IV. 결론 ————— 19

〈별첨〉 해외 비영리데이터 등록현황 : 미국과 영국의 사례 중심으로

한국 비영리조직¹⁾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I. 들어가면서

국내 비영리 조직의 수는 몇 개인가? 그 중 ‘공익성’이 있는 곳은 몇 개인가²⁾?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

이 보고서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비영리섹터의 통합된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내고, 구성조직의 성격을 구분해 세금혜택을 달리 하는 등 정책적 판단에 활용하는 반면, 한국의 비영리는 그 숫자와 성격의 분포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비영리 조직이 단일 조직이 아니라 43개의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 비영리조직의 정보취합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살펴보고, 현재 등록되어 조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보고서의 또 다른 목적은 산재되어 있는 주무부처 만큼이나 복잡한 비영리조직 관련법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그려보는 데 있다.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당사자들도 본인의 조직이 어떤 설립근거와 법제도적 적용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책입안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주 빠뜨리는 경우를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종사하는 업에 관한 안내서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비영리조직’의 범위는 법적근거가 있는 ‘비영리’ 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며, 영리와 비영리가 혼합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과 미인가조직은 다루지 않는다.³⁾ 사회적경제영역(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세법상 법인격 부여를 받고 지정기부금대상 단체가 될수 있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비영리조직’과 중복되는 곳들이 있고, 중요성이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영역이기에 추후에는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1) 행안부지원 ‘비영리민간단체’와 구별을 위해 비영리섹터 내 조직을 언급할 때는 ‘비영리조직’이라 썼다.

2) 모든 비영리가 공익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비영리는 수익을 조직구성원들이 분배해 갖지 않는다는 의미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들어 협회의 성격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이지만 회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공익성이 없다 할수 있다.

3) 또한 정부주도의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등)는 보고서에서 제외되었으나 공익사업을 수행중에 있고, 특히 지역에서의 정부지원 공익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I. 국내 비영리조직의 법적 정의

국내 비영리조직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연구는 이미 많이 논의 되어 왔다. 통계청의 ‘나눔통계 개선방안’⁴⁾과 한국조세연구원의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통계구축을 위한 정책과제’⁵⁾등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비영리조직의 분류와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비영리조직의 설립근거 및 관련법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인과 비법인

1) 법인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을 말하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⁶⁾을 말한다.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개인이 아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을, 재단법인은 출연된 자산을 중심으로 법인이 설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실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 목적과 운영방향을 정한 ‘정관’이 되고 구성원들의 협의체인 ‘총회’가 있어야 한다. 재단법인은 목적과 운영방향을 정한 ‘정관’과 그 일을 하기위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 설립 시, 재산출연이 가능하고 그 운용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재단법인을,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된다면 사단법인이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일정 규모의 재산이 존재해야 법인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사단법인은 회원확보와 총회개최 가능성, 회비 등이 적절하게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재단법인을 위한 최저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 법인등록을 하는 주무부처나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 허가를 내고 있다. 그래서 3억-5억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매년 기부금 수입이나 설립자(개인 또는 기업)의 추가 기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재단도 많이 있다. 재단법인은 설립시 출연금에 대한 부담 대신 총회를 운영하지 않아 운영 간소화를 꾀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4) 박주연·이희길, 2010. 나눔통계 개선방안, 2011년-05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5) 손원익, 2013. 비영리분야 통계의 실태와 통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6) 사단법인 재단법인 외 특별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이 있다.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2) 비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이다.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강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이다.

이 법은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①~⑤에 해당되면 비영리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도 해당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법인’이 아니더라도 이 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관련 세법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이면서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단체가 정부의 세금으로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활동은 반드시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

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도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비영리임의단체를 등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단&재단)과 비영리민간단체는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 사단 법인은 실무상 50~100명의 회원을 요구하고 기본재산도 필요하다. 비영리민간단체도 기본재산만 없을 뿐 회원 100명과 활동실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등록이 어렵다. 이에 반해 비영리 임의단체는 세무서에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은 가능하다. 고유번호증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법

1) 민법

위에 언급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 또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 등에 근거해 설립될 수 있다.

민법은 민간인과 민간법인 등 법률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사적영역 상의 일반법이다. 이 법에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어떻게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제공되고 있다. 법적 주체가 되는 것, 즉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말한다. 민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법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다.

1960년 이전까지 한국은 구 일본 민법에 근거하고 있었다. 구 일본 민법상 법인은 공익성이 증명된 경우에만 법인격을 취득할 수가 있었다. 이때까지는 일반 비영리법인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공익성 증명에 성공한 기관만이 공익법인이 될 수 있었다. 자연히 1960년 이전에는 설립에 성공한 법인의 수가 매우 적었다. 1960년 적용되기 시작한 한국 민법의 제32조 조항에서는 공익성보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비영리’ 기관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게 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특별법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그러던 중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어 일반 비영리법인과 다른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폐단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운영상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조항이 강조된다. 그 이후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1973년 의료법에 의해 의료법인이 별도의 근거법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특별법을 통해 설립운영되는 비영리법인과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법인이 별도로 구분되기 시작한다. ‘사립학교법’과 ‘의료법’은 운영상 드러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과 법인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1970년대에 들어 앞의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들, 특히 기업이 설립한 재단에서 임직원 지원금을 재단에 기부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재단 장학금으로 직원자녀 교육비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된다. 이를 위해 ‘공익재단’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앞의 특별법과 달리 이 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면서 동시에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에서는 ‘공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그림1] 비영리조직 설립근거법의 역사



3. 세법과 비영리조직

1)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국내법인의 납세의무와 과세범위를 다룬 법이다. 여러 법률 중, 법인세법의 ‘비영리(내국)법인’ 이 가장 넓은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위에 언급된 비영리, 공익법인을 모두 포괄하고, 이에 더해 공익적 사업을 하지만 법인 설립을 못한 단체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 상속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공익법인’은 적극적인 세제혜택, 즉 그 기관이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자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공익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표1 : 법률상 규정하는 비영리의 범위 요약〉

	법률	비영리 범위
설립 근거법	민법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 보조나 자금, 학술,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세법	법인세법	〈비영리내국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등〉 종교,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 예술 문화, 공중위생 환경보호, 공원 등,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4. 기부금 관련 법

1) 지정기부금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은 기부금을 내는 개인, 기업(법인)에게 손금산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필요하다.⁷⁾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이나 기업에게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필요한 서

7) 별도 지정 없이 바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들도 있다.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류를 준비해 해당 주무관청에 제출한 후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공익을 위한 사용,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모금액 활용실적을 해당단체와 국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지정기부금단체는 6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범위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범위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이하 생략)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정기부금 지정단체 여부는 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 → 법령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시 행정안전부 추천을 받은 후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한다. 소득세 법령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법인세 법령에서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기부금은 영수처리 가능하지만 기업이나 법인의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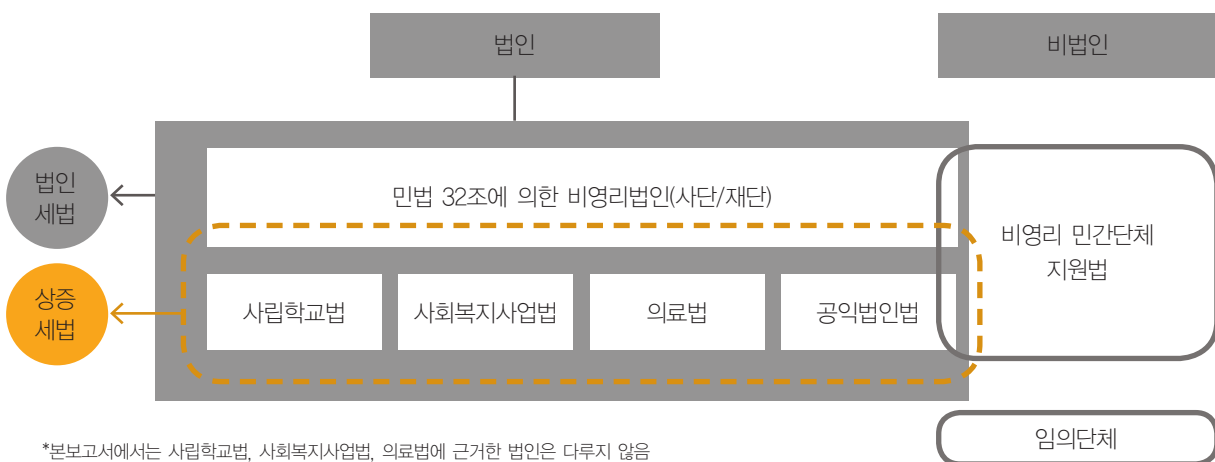
3)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개인이나 조직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다.

〈표2: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차이〉

구 분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 정 근 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등록(설립) 대상	학교,유치원,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설립법'에 의한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곳 중 요건을 갖춘 곳
기 부 금 공 제 대 상	개인·법인 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	개인기부금만 공제 허용
공 제 범 위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 필요경비 공제 • 사업자외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이상 30%) • 법인: 손금산입된 법정기부금 등 차감한 소득금액의 10%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 필요경비 공제 • 사업자외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2천만원 이상 30%)

[그림2] 비영리조직 구조도



*본보고서에서는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에 근거한 법인은 다루지 않음

Ⅲ. 비영리조직 등록현황

1. 국내 비영리조직 데이터 현황

비영리조직 설립 시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기 때문에 국내 비영리조직의 데이터는 크게 법인/비법인(비영리민간단체), 중앙부처별/지자체별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단을 받을 수 있다.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법인대표자와 간단한 사업내용, 연락처 등이나 명단을 제공하는 기관마다 그 내용은 다르다. 또한 비영리법인 중 기부금 수입 3억, 자산 5억 이상의 법인은 의무공시 공익법인으로서 매년 국세청에 공시양식을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각 부처 및 지자체에 다양한 단체들의 명단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는 생산되고 있지 않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자체별 부처별 등록된 비영리법인(민법, 공익법인법상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행안부에서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하여 규모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비영리섹터라는 규모를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민간단체 총람의 풀뿌리단체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한계가 내재된 추측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관한 규모를 살펴본 뒤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규모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비영리조직의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국세청, 행정안전부, 통계청, 보건복지부에서 생산하고 있다. 민간기관으로서 한국가이드스타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하여 공익법인 연감을 발표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에 관해 지식콘텐츠연구소, 시민운동정보센터에서 민간단체총람을 발간해왔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총람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 가능한 자료로 구축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전환 작업을 하였고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 관리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등록단체 통계와 단체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내 비영리섹터 활동 조직의 데이터 구축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3: 국내 비영리단체 데이터 현황〉

데이터 출처	2차 데이터 생산처	대상	내용
국세청	한국 가이드스타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공익법인 가운데 의무공시 공익법인 대상 (수입 3억원 또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중 공익법인 총량 분석 2017년도 한국 공익법인 연감 발표
		지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단체 열람가능 기본사항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기부금의 수입 지출 명세, 기부금의 지출명세서(국내, 국외사업)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데이터 출처	2차 데이터 생산처	대상	내용
기획재정부	없음	지정기부금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총 3,127개 (누적단체 2016년도)) • 지정기부금단체지정(취소)리스트 / 한글파일 / 지정단체 총 148개 (법인 및 협동조합포함) 취소단체 총 65개 정보 제공(2016년도)
행정안전부	없음	비영리민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단체리스트 • 중앙부처 등록단체 총 1,599개 / 지방자치단체 총 11,865개 = 총 13,464개 (2016년 4분기)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체 기초통계 볼 수 있음 • 관리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설문조사진행 • 조사대상 : 2015.06.30 기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2,630개 단체 중 718개 단체 설문응답) / 조사기간 : 2015.10.01 ~ 2015.11.30. • 조사내용 : 부처별 단체수, 부처별 응답단체 현황, 단체활동영역, 단체별 회비납부평균회원수, 회비미납부평균회원수, 재정수입원(정부지원사업, 외부후원금(기업제외), 수익자체사업, 회원회비, 기업후원, 기타) 비율, 연간예산규모에 따른 단체수 • 지원사업통계 : 연도별 신청 및 선정 건수, 유형별(사회통합과 복지증진, 선진시민의식 함양,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국제교류협력) 신청 및 선정 • 연도별사업정보 : 유형별 보조금(예산, 집행, 잔액) 및 자부담(예산, 집행, 잔액) 총액 • 유형별로 지원받은 단체리스트 및 각 단체 기초정보, 사업보고서, 정산결과서 확인가능
통계청	없음	비영리민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등록단체수 : 전체등록단체수(중앙, 시도), 전년대비 증감단체수(중앙, 시도) • 지표설명(개념, 의의/활용도) 및 해석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도별/시별 민간단체등록현황 리스트 있음 •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보건복지부	없음	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현황 • 유형,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엑셀 다운로드 가능
행정안전부	지식콘텐츠연구소	비영리민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비영리민간단체총람 • 2015년도 12월 기준으로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총 12,894개 중 중복 및 폐업을 제외하고 12,691개 단체 수록
	시민운동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민간단체총람 (1997,2000,2003,2006,2009,2012) • 활동분야별 단체 정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운동정보센터의 조사자료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지 않은 채 단체 정보를 총람형태로 정리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2012년 총람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2013년도 진행 • 주요변수 : 단체영역, 활동지역, 회원수, 예산, 설립년도, 운동목표, 주요활동 및 사업, 네트워크, 실무자 및 책임자 정보 (공석기·임현진, 2016. 한국시민사회를 그리다. 진인진)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2.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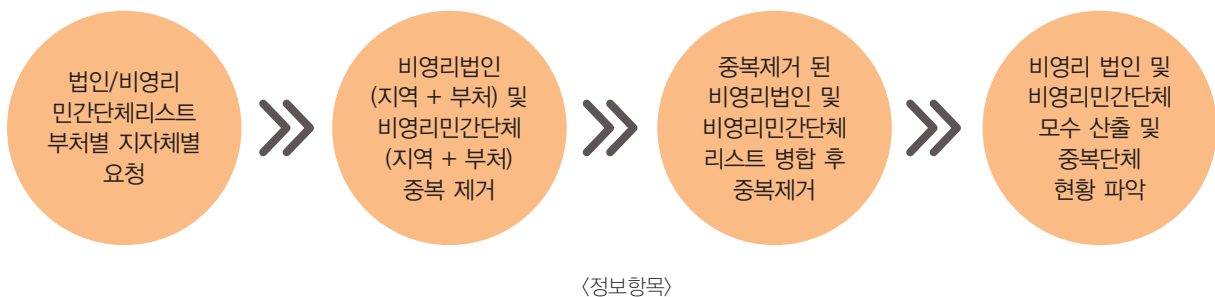
2017년도 국내비영리현황보고서 ‘한국비영리섹터지형분석’ 연구보고서를 위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중앙부처별, 지자체별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의 명단을 받아보았다.

〈표4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현황〉⁸⁾

	중앙부처	지자체
비영리 민간단체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26개)	경기도분청, 경기도북부청,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18개)
비영리법인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교육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18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17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받은 부처 및 지자체별 국내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전체 모수를 파악하기 각 리스트의 단체들을 하나의 파일로 모아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받은 부처별 지자체별 명단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여러 명단을 하나의 명단으로 병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각 명단을 병합하기 앞서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단체에 관한 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그림3: 병합과정〉



단체명, 단체유형(사단/재단),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허가번호,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근거법, 회원수, 직원수

8) 기빙코리아 2017 연구 가운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공석기, 유지연 연구원이 진행한 ‘한국비영리섹터지형분석’의 하드데이터와 일부 지자체 및 부처에 정보공개요청하여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이들 정보항목은 각 부처별, 지자체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시는 다음의 표를 통해 볼 수 있다.

〈표5: 지자체별 정보항목 예시〉

지자체	정보항목
강원도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제주도	단체명, 단체유형, 소재지, 등록일, 주된 사업, 주관과
경상북도	단체명, 단체 유형, 주관과

여기서의 문제는 정보항목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보입력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처별 명단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표6: 부처별 정보항목 예시〉

중앙부처	정보항목
해양수산부	단체명, 단체유형, 등록일, 주된 사업
제주도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회원수
보건복지부	단체명, 허가번호, 단체유형,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근거법, 회원수, 직원수

명단내 정보항목의 통일성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일형식(한글 또는 엑셀), 엑셀파일 내 저장형태(한 줄에 여러 개의 단체명이 한꺼번에 기입되어 있는 경우)들 또한 각기 달라 명단의 형식을 모두 통일한 뒤 병합을 해야 했다. 국내 전체 비영리단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도 부처별 지자체별 명단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으나, 이렇게 각 명단이 다른 형식과 다른 정보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며 데이터를 취합하고 축적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통일성 있는 정보형태가 필요하다.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1) 비영리법인⁹⁾

(1)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지자체별 비영리법인은 7개 광역시, 9개도에 자료 요청을 하여 받았다. 우선 7개 광역시, 9개도에서 제출한 등록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7 :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지자체	단체수		지자체	단체수	
7개 광역시	서울특별시	3,493	8개도	강원도	43	
	인천광역시	317		제주도	166	
	대전광역시	181		충청남도	76	
	광주광역시	460		충청북도	131	
	대구광역시	432		전라남도	120	
	울산광역시	128		전라북도	1,184	
	부산광역시	414		경상남도	743	
총계		5,425		총계	경상북도	492
					경기도 경기도본청(1,744) 경기북부청(200)	1,944
				총계	4,899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는 예상한 바대로 압도적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그 수가 몰려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서울, 경기의 지역의 단체수가 비슷한 수를 이루는 반면 전라북도에는 약 1,000여개가 넘는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의 데이터 형식 차이를 살펴보고 이 현상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알기가 어려웠다.

9) 등록된 단체 수는 각 부처 및 지역을 통해 전달받은 단체 명단을 중복제외 없이 단순 합산한 숫자임을 밝힌다.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2) 부처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부처별 등록법인은 중소기업벤처부를 제외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인 총 17개 부처와 교육청의 등록법인을 포함한 단체이다.

〈표8 : 부처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부처	단체수	부처	단체수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84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294	법무부	218
행정안전부		576	보건복지부	543
고용노동부		482	산업통상자원부	1,0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15	여성가족부	240
교육부		42	외교통상부	557
국방부		66	통일부	373
국토교통부		364	환경부	566
기획재정부		278	교육청	3,499
총계		11,630		

각 부처들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들은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특수법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단체가 포함되어 법인리스트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장학재단, 장학회, 발전기금등 3,499개 단체가 교육청 공익법인 리스트로 등록되어 있어 교육청의 리스트 또한 부처 내 등록된 비영리공익법인에 포함하여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2) 비영리민간단체

(1)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자체별 등록단체 리스트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비영리민간단체등록 현황의 경우 도별로, 시별로 하나의 파일에 단체의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다. 각 지자체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9 :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

	지자체	단체수		지자체	단체수
7개 광역시	서울특별시	2,038	8개도	강원도	326
	인천광역시	676		제주도	350
	대전광역시	538		충청남도	425
	광주광역시	593		충청북도	452
	대구광역시	411		전라남도	564
	울산광역시	348		전라북도	916
	부산광역시	810		경상남도	722
	세종특별자치시	26		경상북도	761
			경기도 경기도본청(1,744) 경기북부청(200)	1,944	
총계		5,440	총계		6,695

비영리민간단체의 분포도 역시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서울 및 경기 수도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비영리법인에 비해 전라북도 내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나 916개로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2) 부처 및 위원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

비영리법인은 교육청을 제외하고 17개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의 현황이라면 비영리민간단체는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등 청과 위원회까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각 부처 및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0 : 부처 및 위원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

	부처	단체수		부처	단체수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39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28	국가인권위원회	1		
행정안전부		216	금융위원회	6		
고용노동부		47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문화체육관광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방송통신위원회	11		
교육부		50	소계		29	
국방부		36	청	경찰청	11	
국토교통부		12		국세청	1	
기획재정부		7		농촌진흥청	5	
문화체육관광부		166		문화재청	7	
법무부		10		산림청	18	
보건복지부		188		특허청	2	
산업통상자원부		10		통계청	1	
여성가족부		103		중소기업청	3	
외교통상부		184		소계		48
통일부		167		처	국민안전처	2
환경부		177	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		11	
			국민안전처(안전행정부)		31	
			국민안전처(해양경찰청)		9	
	국가보훈처		14			
	법제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2			
	인사혁신처		4			
소계			74			
총계		1,461	총계		151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중앙부처의 경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환경부에 100개 이상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외 부는 소수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위원회, 청, 처에는 151개 단체가 분포되어 등록되어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정리된 지자체별 부처별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단체수를 중복제거하지 않고 단순합산해보았다. 중복을 제거한 전체 모수를 알기 위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① 지역별 부처별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리스트 내 중복 수를 확인 ② 중복제거 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사이 중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최종 모수 및 중복단체 현황을 살펴보았다. 각 부처별 지역별로 받은 엑셀 또는 한글파일은 MS-SQL을 사용하여 전체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표11: 전체 모수 확인 과정〉

1단계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부처별	① = 11,630 - 중복	③ = 1,612 - 중복
지자체별	② = 10,324 - 중복	④ = 12,135 - 중복

2단계

① + ② - 중복 = 비영리법인 총 21,652개

③ + ④ - 중복 = 비영리민간단체 수 총 12,887개

3단계

(비영리법인 총 21,652개 + 비영리민간단체 총 12,887개) - 중복 860개 = 33,679개

위와같이 중복을 제외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합산한 단체의 수는 총 34,539개이다. 이중 중복된 단체는 총 860개로서 34,539개에서 중복된 단체 수 860개를 제외하면 33,679개이다. 따라서 국내 비영리조직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의 규모를 33,679개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중 발간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기부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방안(2018.3.3.)」 자료에 따르면, 법인과 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수는 아래와 같다.

〈표12: 설립근거법에 따른 비영리조직의 수〉

구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법적 근거	민법	공익법인법	비영리단체 지원법	세법(법인세 소득세법)
허가·등록·지정	허가(각 부처)	허가(각 부처)	등록(행안부 지자체)	지정(기재부)
숫자	20,414개	3,407개	13,427개	3,480개+α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통계는 법무부 파악 자료 근거('17.6 기준 / 농촌진흥청 및 경상북도 소관 법인 미 포함)

아름다운재단(이하 재단)에서 파악한 자료의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합은 21,652개, 시민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자료는 23,821개로 재단에서 파악한 수가 2,169개가 적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재단의 자료에서 12,887개, 위원회 자료로 540개 차이가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재단의 자료는 부처/지자체별 부처/지자체간 중복자료를 제외한 부분과 두 자료의 조사시점 차이가 다소 큰 차이의 원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원회 자료의 경우 미파악된 소관부처가 있음으로 인해 두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자료의 또하나의 한계는 파악된 조직이 생존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를 위해 중복된 단체명을 제거하고 대략적 비영리조직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1단계에서 지역별 부처별 단체의 명단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중복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단체명이 동일하나 한 단체에 대해 두 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소재지가 다른 경우
- ②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 ③ 등록일이 다른 경우
- ④ 같은 시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관부서가 바뀐 경우
- ⑤ 소재지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⑥ 주된 업무가 변경된 경우
- ⑦ 같은 중앙부서 내 다른 분류 안에 등록된 경우 예시 :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리스트 중 공익법인과 재단 법인 명단에 동시에 있는 경우
- ⑧ 단체 유형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시 :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각각 저장
- ⑨ 정관이 변경된 경우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각 부처별, 지역별로 관할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의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각 지역 및 부처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등록, 지원, 관리함에 있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비영리 조직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원배분 및 각 조직의 협업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비영리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통계자료를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절실하다. 통합데이터가 없다면 적어도 각 부처별 지역별 정보입력기준이 통일되었다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시간이 덜 소요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 발전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각 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일원화된 정보를 생산이 절실하다.

1차적으로 각 부처 및 지역별로 정보입력에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데이터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가 일원화 될 수 있다면 국내 비영리섹터에 대한 전체 청사진을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적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는 단순히 전체 규모 파악의 어려움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 또한 내재하고 있다.

1) 단체등록(해당주무부처/지자체), 지정기부금단체 허가와 재지정(기재부), 공시(국세청), 기부금품모집등록(행안부 및 지자체), 기부금신고(세무서) 별도 또는 중복으로 인한 행정낭비

다음은 민법32조에 의해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아름다운재단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이다.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이다.

2월 :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 행정안전부

3월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신고 세무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 세무서

세무전문가로부터 공익법인 세무확인 - 세무서

4월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국세청 (상증세법)

6월 : 기부금 발급명세서 신고 세무서

해당 시(연1~2회) : 기부금품모집 등록 및 결산보고서울시(기부금품법)

연1회 : 외부감사

2) 법과 정책이 부처와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 및 적용

법, 세무 관련된 의무사항이나 기부금품모집, 운영 내용이 해석에 따라 다른 판단이 적용되어 비영리조직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위법이나 운영의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3) 법체계 존재, 행정 수행 부재

소관 부처별로 1~2인의 담당자가 타 업무와 병행 하고 있고, 담당자 변경 시 다시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처리 지연이 발생한다.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해 1)의 사례와 같이 수많은 보고와 행정 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희망씨앗재단' 과 같은 곳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었다.

4) 일반 시민이나 기부자가 원하는 종합적 정보 부족

일반시민 또는 기부자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보 탐색 시 수많은 해당기관을 개별적으로 직접 접속해야 한다. 국세청 공시대상만 검색 가능한 가이드스타가 현재 거의 유일한 정보제공자 이다.

비영리나 제3섹터를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있는 미국, 영국, 일본과 달리, 26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는 국내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현황을 개괄하는 작업으로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10여년 이상 문제제기 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비영리섹터를 관할하는 '공익위원회' 설치하기 위한 논의가 새 정부 출범 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관련하여 공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해 현재 법제도의 현황을 이해하고 각각의 법률에 근거한 조직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과제일 것이다. 공익위원회의 구조와 역할에 현 제도가 어떻게 재배치, 변경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당사자들이 이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별첨

해외 비영리데이터 등록현황 : 미국과 영국의 사례 중심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비영리단체 데이터 등록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민간 데이터는 정부에서 집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기에 가능하다.

1)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NCCS)¹⁰⁾ : 미국사례

NCCS는 미국의 비영리섹터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민간단체이다. 미국의 경우, 세법 501(c)(3)에 해당하는 공공자선단체와 민간재단은 매년 국세청에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단체의 재정 및 활동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¹¹⁾ 국세청의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재생산하는 민간단체는 미국 가이드스타, 파운데이션센터, 채리티내비게이터도 있으나 그 가운데 NCCS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NCCS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아카이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Business Master Files

Core Financial Files

Core Supplement Financial Files

Statistics of Income Sample Files

Business Master Files(BMF)

미국 국세청의 면세혜택을 받도록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 활동하고 있는(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의 개괄적 정보를 볼 수 있다. 1995년부터 데이터를 추적해왔다. 공공자선단체, 민간재단, 그리고 501(c)(other)을 포함한 등록된 활동 중인 모든 단체, 공공자선단체와 민간단체를 포함한 501(c)(3) 단체, 사회복지단체, 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다른 면세단체들에 대한 월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수를 추적하고, 면세대상 단체를 체크하며, 지역별 단체리스트를 만들고, 비영리단체 목록을 만들 수 있다. 또한 'Quick Facts About Nonprofits'를 통해 세금면제를 받는 단체의 수(공공자선단체, 민간재단, 그밖에 비영리단체(chambers of commerce, fraternal organizations, and civic leagues) 항목별 단체수, 비영리단체 개요, 공공자선단체 Top10 리스트, 공공자선단체, 자원봉사 및 자선기부, 재단기부에 관한 통계적 수치를 볼 수 있다.

10) 본 내용은 NCCS 웹사이트(<http://nccs.urban.org/>) 내 NCCS Data Files 개요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11) 박주연·이희길. 2010. 나눔 통계 개선방안. 2011-05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Core Financial Files

공공자선단체와 민간재단이 작성해야 하는 Form990 (Form 990, Form 990-EZ, Form 990-PF)의 약 60개의 재정변수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1989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데이터를 통해 비영리섹터의 재정에 관한 통계현황, 단체의 재정 검토, 지역별 재정보고 작성, 지역별·규모·형태에 따른 조직의 재정 비교, 수입·지출·자산에 의거한 재정분석에 관한 데이터를 발굴할 수 있다.

Core Supplement Financial Files

재정, 프로그램, 직원급여 정보 등을 포함한다. NCCS에서 개발한 분류코드인 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NTEE) 코드 내 가장 큰 단체들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수입, 지출, 자산에 관한 세부적인 재정분석, 관리자/보상체계 자료 검토,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는데 유용하다.

Statistics of Income Sample Files

이 데이터는 매우 종합적인 조사 파일로서 재정에 관한 다른 데이터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300개 이상의 재무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매년 공공자선단체, 민간재단, 그 외 다른 면세단체에 관한 재무사항의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밖에 1998-2003년까지 Form 990과 990-EZ 양식에 신고해야 하는 501(c)(3) 공공단체에 관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National Nonprofit Research Database도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및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2)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NCVO)¹²⁾ : 영국사례

NCVO는 영국의 멤버십협회로서 전국단위 단체부터 지역단체까지 지원하며, 1996년부터 매년 영국시민사회 연감(UK Civil Society Almanac)을 발표하고 있다. 이 연감은 시민사회영역(voluntary sector) 내 약 7,500개 자선단체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로 미디어 인용, 정책수립 등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자료 사용 전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심각한 오류를 정리하며 타당도를 측정하여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연감에서 보여주는 영국 시민사회영역은 규모와 분포뿐만 아니라 수입, 지출, 인력도 산출하여 이 영역에 관한 경제적 가치도 파악하고 있다. 영국시민사회연감에서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2) 본 내용은 NCVO 웹사이트(<https://data.ncvo.org.uk/>)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으로 살펴 본 규모와 정보등록 현황

〈영국시민사회연감 항목〉

항목	내용			
시민섹터	①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⑤ 인력	② 수입과 지출 ⑥ 데이터뱅크	③ 자산 ⑦ 방법론	④ 수혜자
개요	① 섹터의 규모와 크기	② 지역적 분포	③ 경제적 가치	
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자 비율 및 개요 ④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와 장애물	② 자원봉사자 프로파일 ⑤ 자원봉사의 인프라	③ 자원봉사자 활동	
수입	① 재정적 개요	② 수입원천	③ 개인 수입	④ 정부 수입
노동	노동인구			
지출	① 지출	② 운영비 (generating funds)		
개요	수혜자			
자산	① 자산과 reserves	② liabilities and loans	③ 투자	
방법론	방법론			
부록	① 자료 트렌드의 변화 ④ 자산관련 데이터	② 범위관련 데이터 □ 수입관련 데이터	③ 지출관련 데이터	

등록된 조직의 수입, 노동, 지출, 자원봉사자에 관한 데이터를 통해 영국 시민사회영역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등록된 정보를 통한 재정 및 행정 데이터 산출뿐 만아니라 영국 시민섹터의 구조와 경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도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